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432

발의연월일: 2025. 3. 28.

발 의 자:이인선·임종득·강선영

고동진 • 박준태 • 강대식

김성원 • 박충권 • 최은석

김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 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사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또 한, 탄핵소추 조사과정에서 그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별도 로 보장하고 있지 않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권한이 정지되며, 법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등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있고 탄핵소추 대상자의 소명기회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자

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항 중 "발의된"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제출된"으로, "보고하고, 본회의는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탄핵소추안은"으로, "보고된"을 "조사 결과가 보고된"으로 한다.제1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회부받은 탄핵소추안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핵소추의 발의 및 조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이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 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여 조사하게 하고. 법제사법위 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원회의 조사 결과가 제출된---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 ② 탄핵소추안은-----조 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사 결과가 보고된----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 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 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는 제

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

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

사 · 보고하여야 한다.

130조제1항에 따라 회부받은

탄핵소추안을 지체 없이 조사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과

	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